예 산 총 칙

2022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96,654,868	23,899,646
일반회계	755,977,631	22,679,329
특별회계	40,677,237	1,220,317
공기업특별회계	13,203,867	396,116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13,203,867	396,116
기타특별회계	27,473,370	824,201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0,100	1,803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88,523	2,65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60,742	28,822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994,960	29,849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9,098,227	272,947
수질개선 특별회계	14,270,818	428,125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2,000,000	60,000

제 2 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840,503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4,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